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28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진성준 · 임오경 · 김남근
김주영 · 김태년 · 박홍배
정태호 · 민병덕 · 서영석
김영호 · 김우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준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기준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말일”을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4월 10일”을 “3월 2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4월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1일”을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 ----- ----- -----15일(국 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 에는 2월 말일)-----.
제37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① (생략)	제37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총계산서를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 -----3월 25 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 는 해에는 4월 10일)-----.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5월 31일)-----.